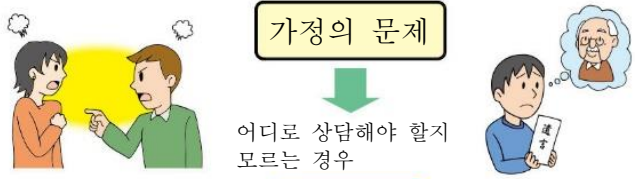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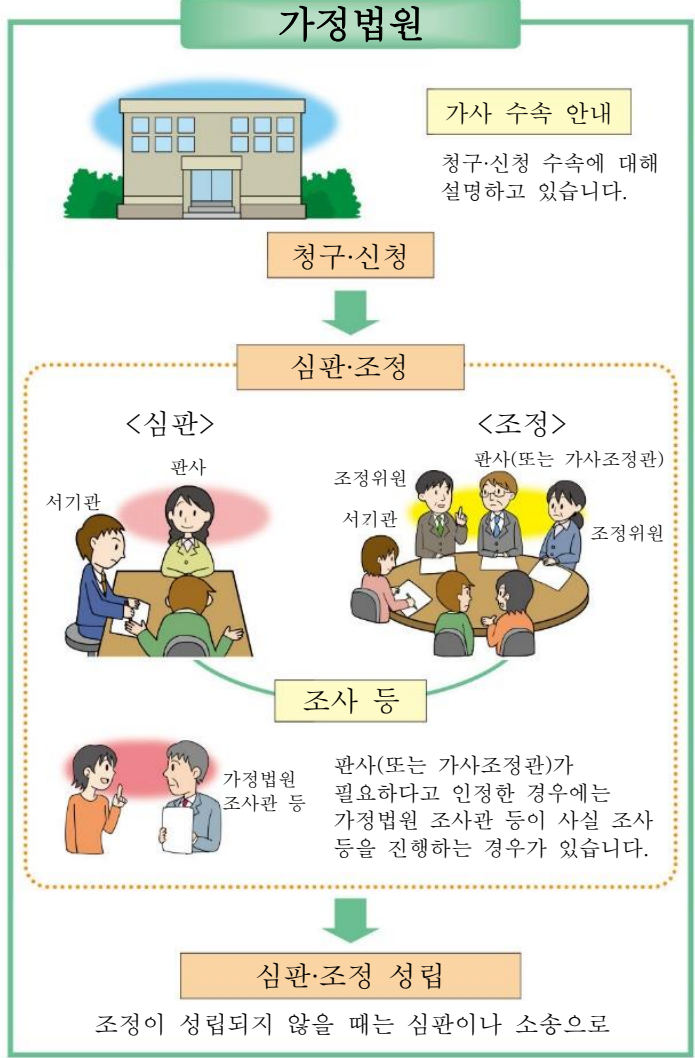


# 가사 사건의 구조



**법 테라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가장 적절한 상담 창구 정보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일본사법지원센터 법 테라스 안내  
<https://www.houterasu.or.jp/>

법적 문제로 고민될 때는  
 0570-078374

평일 9:00~21:00 토요일 9:00~17:00

\*일반전화의 경우는 전국 어디서나 3분 8.5엔(세금 별도)으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IP 전화의 경우는 '03-6745-5600'으로 전화하십시오.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문의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법원 웹사이트 안내  
<http://www.courts.go.jp/>

가정법원의 수속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와 대표적인 가사 사건에 대한 정형적인 청구서·신청서 용지 및 그 기입 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법원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전국 가정법원(본청)의 전화번호

도도부현청이 있는 47 곳 이외에 하코다테, 아사히카와 및 구시로를 추가한 총 50 곳에 가정법원(본청)이 있고, 그 밖에 지부·출장소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가사 수속 안내를 희망하시는 분으로 가까운 가정법원의 소재지, 교통기관, 접수시간 등이 궁금하신 분은 문의한 후 가정법원 창구를 방문하십시오. 단, 전화에 의한 가사 수속 안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東京	03-3502-8331	広島	082-228-0561
横浜	045-345-3463	山口	083-922-9148
さいたま	048-863-8844	岡山	086-222-4168
千葉	043-333-5327	鳥取	0857-22-2171
水戸	029-224-8175	松江	0852-35-5200
宇都宮	028-333-0048	福岡	092-711-9651
前橋	027-231-4275	佐賀	0952-38-5633
静岡	054-273-5454	長崎	095-822-6151
甲府	055-213-2541	大分	097-532-7161
長野	026-403-2038	熊本	096-206-3534
新潟	025-266-3171	鹿児島	099-222-7121
大阪	06-6943-5745	宮崎	0985-68-5146
京都	075-722-7211	那覇	098-855-1273
神戸	078-521-5221	仙台	022-745-6230
奈良	0742-88-6521	福島	024-534-2439
天津	077-503-8154	山形	023-623-9511
和歌山	073-422-4191	盛岡	019-622-3165
名古屋	052-223-3411	秋田	018-824-3121
津	059-226-4711	青森	017-722-5732
岐阜	058-262-5346	札幌	011-221-7281
福井	0776-91-5069	函館	0138-38-2350
金沢	076-221-3114	旭川	0166-51-6251
富山	076-421-8154	釧路	0154-41-4171
		高松	087-851-1942
		徳島	088-603-0140
		高知	088-822-0440
		松山	089-942-0077

\*가정법원(본청, 지부·출장소)의 소재지, 교통기관, 전화번호 등에 대해서는 법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가사 사건과 그 관할 법원 일람표

1. 심판으로만 취급되는 사건(청구 수수료 1건 800엔)

사건의 종류	관할 법원
후견 개시, 보좌 개시 및 보조 개시에 관한 사건	후견 개시 심판 등을 받을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
실종 신고에 관한 사건	부재자 종전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가정법원
자녀의 성 변경에 관한 사건	자녀 주소지의 가정법원
미성년자의 양자 입양에 관한 사건	양자 주소지의 가정법원
사후 파양에 관한 사건	청구인 주소지의 가정법원
특별 양자 입양의 성립 및 그 파양에 관한 사건	양부모 주소지의 가정법원
미성년 후견인 선임에 관한 사건	미성년자 주소지의 가정법원
상속 포기 및 한정 승인에 관한 사건	상속 개시지(피상속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상속 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건	상동
유언에 관한 사건	상동
임의 후견에 관한 사건	본인(임의 후견 계약 위임자) 주소지의 가정법원
성 또는 이름 변경에 관한 사건	청구인 주소지의 가정법원
취직에 관한 사건	취직하고자 하는 지역의 가정법원
부양 의무 설정에 관한 사건	부양 의무자 주소지의 가정법원

2. 조정과 심판 모두로 취급되는 사건(신청·청구 수수료 1건 1,200엔)

사건의 종류	심판 청구를 하는 경우의 관할 법원
부부의 동거, 기타 협력 부조에 관한 사건	청구인 또는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
자녀 감호에 관한 사건	자녀 주소지의 가정법원
이혼하는 경우의 재산 분여에 관한 사건	청구인 또는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
친권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건	자녀 주소지의 가정법원
부양 순위 결정에 관한 사건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
유산 분할에 관한 사건	상속 개시지(피상속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기여분에 관한 사건	유산 분할 사건이 계속되는 가정법원

\*1. 상기 이외에, 당사자가 합의해서 정하는 가정법원도 심판 청구를 하는 경우의 관할 법원이 됩니다.  
 \*2.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의 관할 법원은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정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3. 조정으로만 취급되는 사건(신청 수수료 1건 1,200엔)

사건의 종류	관할 법원
1, 2의 사건을 제외한 일체의 가사 사건(이혼, 파양 등)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정하는 가정법원

リサイクル適性 (A) (令和元年10月 最高裁判所)  
 この印刷物は、印刷用の紙へリサイクルできます。

# 가사 사건 안내서

가사 심판·가사 조정을 이용하시는 분을 위하여



# 가정법원

## 가사 사건이란?

가정법원에서는 부부, 부모자녀, 친족, 상속 등에 관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그 해결을 요구하며 청구·신청된 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사 사건이라고 합니다.

가사 사건에는 심판과 조정의 2 종류가 있는데, 뒷면의 표와 같이 심판으로만 취급되는 사건, 조정과 심판 모두로 취급되는 사건, 조정으로만 취급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 \* \*

가사 사건은 가정 내의 문제를 취급하기 때문에 공개 법정에서 서로 주장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이른바 소송과는 달리, 심판과 조정 모두 비공개로 심리되어 관계자의 프라이버시가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또, 격식을 중시하지 않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으므로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

각 가정법원의 청구에서는 가정 내 문제에 대해 가정법원의 사건으로서 취급할 수 있는 사안인지, 어느 법원에 어떤 청구·신청을 하면 되는지 등의 가사 수속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청구·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청구·신청을 하려면 해결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청구·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기재한 청구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청구에는 기입하기 쉬운 정형 청구서·신청서 용지가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재 방법을 모를 때는 가사 수속 안내 또는 접수 창구에서 문의하십시오.

그리고, 청구·신청할 때 호적등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가사 수속 안내 또는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십시오.

### 청구·신청 비용은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청구·신청할 때는 수수료로서 사건에 따라 800 엔 또는 1,200 엔의 수입인지를 청구서 또는 신청서에 붙이게 됩니다.(뒷면의 표 참조) 또, 통신 등을 위해 사용하는 우표 등이 필요하므로 가사 수속 안내 또는 접수 창구에서 문의하십시오.

그리고,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는 그 밖의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심판 청구를 한 후의 수속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있는 사건에서는 청구서 사본을 상대방에게 송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떠한 청구가 되었는지를 알립니다.

또, 청구한 사건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가정법원에서 일정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조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회답서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반드시 반송해 주십시오.

그 밖에 청구인이나 관계자가 조사 등이나 심문을 위해 호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 등의 기일에는 가정법원 조사관 등이 사정을 듣고, 심문 기일에는 판사가 직접 사정을 묻습니다. 판사는 이렇게 해서 얻어진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청구에 대해 판단하게 됩니다.

### 조정 신청을 한 후의 수속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사본을 상대방에게 송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떠한 신청이 되었는지를 알립니다. 또, 조정에서는 신청인과 상대방 쌍방에게 조정 일지와 장소 등이 통지되므로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십시오. 이때, 참고가 될 만한 서면 등이 있으면 지참해서 설명하면 좋을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판사 또는 가사조정관과 2 명 이상의 가사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가 쌍방으로부터 사정을 듣고 의견을 청취해서 쌍방이 납득하고 타당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쌍방간에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이 조정 조서에 기재되고 조정이 성립됩니다. 도저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조정 불성립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뒷면 표 2 의 사건은 자동적으로 심판 수속으로 넘어가 또 심판이 이루어지고 종료되게 됩니다. 이에 반해, 뒷면 표 3 의 사건은 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게 되는데, 이혼이나 파양, 자녀 인지, 친부모자녀 관계 존부 확인 등 인사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재판)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 가정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어떻게 취급되나요?

신청인이나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는 가정법원이 심판을 진행할 때 판단의 자료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가정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제출하기 전에 미리 복사 등을 해 두십시오.

신청인과 상대방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대방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방법 등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신청하기 전이라면 가사 수속 안내 또는 접수 창구로, 신청한 후라면 담당 법원 서기관 등에게 문의하십시오.

### 만일 조정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나 심판으로 명령된 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정법원에는 이행 확보 수속이 있습니다. 이 수속은 조정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나 심판으로 명령된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가정법원이 이행 상황을 조사해서 이행해야 할 사람에게 임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또, 임의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또는 가정법원에서 강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수속(민사 집행 수속)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법원으로 문의하십시오.

